

개정 전	개정 후
	<p><u>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조합”이라 한다)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(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</u></p>
<p>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조합”이라 한다)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</p> <p>2. (생략)</p>	<p>1. -----지방자치단체조합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■ 법률 부칙

제2조(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① 제8조제3항,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58조제4항, 제63조제2항 · 제3항 … 중략 …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